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111
----------	-------

발의연월일 : 2025. 6. 27.

발 의 자 : 이수진 · 송옥주 · 김문수
민병덕 · 허성무 · 문진석
서영교 · 김현정 · 전종덕
김정호 · 전진숙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형태의 다변화로 특수고용형태노동자,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등 비전형노동자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이들의 노동기본권은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또한 간접고용의 확산으로 사업주들이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파견·도급계약 등을 이유로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와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하청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조건과 불안정한 고용에 처해 있음.

한편 노동쟁의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발생한 분쟁상태 즉 이익분쟁에 관한 사항으로 정의되고 있어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주가 제한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근로자 및 사용자 개념을 산업현장의 실질에 부합하도록 확대하고, 노동쟁의의 정의를 현행법의 목적에 부합하게 ‘근로조

건'에 관한 권리분쟁에 관한 사항으로 확대함으로써 비전형·비정규직
· 하청노동자 등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그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
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후단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라목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호 전단 중 “勤勞條件의 決定”을 “근로조건”으로 한다.

이 경우 다른 자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자 및 구직 중인자도 근로자로 본다.

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당해 노동조합의 상대방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거나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

부 칙

이 법은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勤勞者”라 함은 職業의 種類를 불문하고 賃金・給料 기타 이에 준하는 收入에 의하여 生活하는 者를 말한다. <u><후단 신설></u> 2. “使用者”라 함은 事業主, 사업의 經營擔當者 또는 그 사업의 勤勞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事業主를 위하여 행동하는 者를 말한다. <u><후단 신설></u>	第2條(定義) ----- -----. 1. ----- ----- -----. <u>이 경우 다른 자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자 및 구직 중인자도 근로자로 본다.</u> 2. ----- ----- ----- -----. <u>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당해 노동조합의 상대방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거나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 있는 지위에</u>

3. (생략)

4. "勞動組合"이라 함은 勤勞者
가 主體가 되어 自主的으로 團
結하여 勤勞條件의 유지·개선
기타 勤勞者의 經濟的·社會的
地位의 향상을 도모함을 目的
으로 組織하는 團體 또는 그
聯合團體를 말한다. 다만, 다
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勞動組合으로 보지 아니
한다.

가. ~ 다. (생략)

라. 勤勞者가 아닌 者의 加入
을 허용하는 경우

마. (생략)

5. "勞動爭議"라 함은 勞動組合
과 使用者 또는 使用者團體
(이하 "勞動關係 當事者"라
한다)間에 賃金·勤勞時間·福
祉·解雇 기타 待遇등 勤勞條
件의 決定에 관한 主張의 不
一致로 인하여 발생한 紛爭狀
態를 말한다. 이 경우 主張의
不一致라 함은 當事者間에 合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
는 使用者로 본다.

3. (현행과 같음)

4. -----

-----.

가. ~ 다. (현행과 같음)

<삭제>

마. (현행과 같음)

5. -----

-----근로조건-----

-----.

意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自主的 交渉에 의한 合意의 餘地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6. (생 략)	----- ----- -----. 6. (현행과 같음)
--	--